

의안번호	2217153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A1199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3제1항 (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¹⁾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거나 안정적·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, 그 직업생활 및 창업·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“업무지원인”)을 보내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1.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 2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0조제2항제3호²⁾에 따른 장애인 예비창업자 ※(현행) 장애경제인에 대해서만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→(개정안)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3제1항 (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중증장애인”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

제10조(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)

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
3. 장애인(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)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(창업기업 대표자가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)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도 업무지원인을 보내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행법 제8조의2³⁾에 따라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맞춤형 창업교육, 사업화(비용)지원, 창업아이템경진대회,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 - * [참고자료 1]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창업 지원 현황
 - 다만, 현재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업무지원인을 파견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
 - －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을 파견하여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은 2024~2025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월 59시간까지 지원되었으나, 2026년부터는 115개사에 월 최대 160시간까지 지원될 예정임
 - * [참고자료 2]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파견 사업
 -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도 업무지원인을 파견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취지임
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지원인을 파견할 경우 업무지원인의 인건비 지출에 따라 국가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수, 지원규모, 필요한 업무지원인

3) 제8조의2(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) ①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·자문 지원
2.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
3.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
4.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
5.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
6.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 이를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의 수 등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나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창업 지원 현황

(자료: 중소벤처기업부)

□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현황

- (사업목적)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 및 경제활동 의욕 고취
- (근거법률)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8조의2
- (사업내용) 장애 유형별 최적화된 상담·자문,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 발굴,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제공·교육

사업명	지 원 내 용
①맞춤형 창업교육	• (기초교육)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실시 • (특화교육) 장애유형별(시각, 청각) 및 여성장애인 등 특화교육 지원 • (컨설팅) 전문가 1:1 맞춤형 컨설팅 지원
②사업화지원	• 창업 초기비용(인테리어, 시설, 마케팅비 등) 지원
③창업아이템경진대회	• 우수 창업아이템 선정 및 시상
④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	•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및 돌봄공간 지원(제품,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제조·가공설비 등) • 창업, 기술분야 이론 및 실무교육 지원 • 특화사업장 운영

- 소요예산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4	2025	2026
장애인 창업육성	3,169	3,169	3,019

[참고자료 2]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파견 사업 현황

(자료: 중소벤처기업부)

□ 사업목적

- **(목적)**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보조, 의사소통, 경영지도 등 지원
- **(근거)**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0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

□ 사업개요

- **(지원규모)** 2026년 115개사 내외(소요예산 17.8억원)
- **(지원내용)** 경영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지원인 제공(월 최대 160시간)

구 분	지원 직무
업무보조형	• 고객응대, 행정보조(바우처신청, 행정기관 신청서류 작성 등), • 이동지원(동승자가 동행해야 차량탑승이 가능한 경우), • 서류정리, 정보검색, 기타 필요한 업무보조 등
의사소통형	• 수어통역, 점역교정 및 속기
경영지도형	• 공공조달, 법률·회계, 시장분석(가격결정, 트렌드 분석 등), • 홍보 컨설팅(온오프라인 홍보, 고객 재방문 유도) 등

- **(시행주체)**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- **(업무지원인 수)** 2026년 115명(1개사 당 1인)
- **(지원방법)**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 선정, 장애경제인 1개사 당 업무지원인 1인 매칭(지역별 신청 제한은 없음)

□ 사업 지원체계

